

제 호

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

년 월 일

읍장
면장 인
동장

33331-06261일 74mm×105mm

96.10.4 승인 (보존용지(1종) 120g/m²)

(제2쪽)

사용자 유의사항

-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(주소변경의 경우는 전입신고일)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·면·동사무소에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「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」를 제출해야 합니다.(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)
※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.
-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
 -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
 -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※ 전기이륜자동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기간
 -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·후 각각 31일입니다.
 -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재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입니다.
-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제출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
주: 읍·면·동장은 본 증명서를 투명비닐에 넣어 교부한다.

(제3쪽)

1. 제원(구조)			
제원관리번호		차대번호	
차명(형식)		원동기형식	
총 중 량		기 통 수	
배 기 량		연 식	
길 이		높 이	
너 비		승 차 정 원	
적 재 량		원동기마력	
비 고			

74mm×105mm

(보존용지(1종) 120g/m²)

(제4쪽)

2-1. 검사유효기간				
연월일 부터	연월일 까지	검사시행 장소	주행거리	검사책임 자확인
2-2. 튜닝(구조·장치변경) 사항				
순 위	튜닝승인 연월일	튜닝내역	승인기관	확인연월일 확인자㉠

74mm×105mm

(보존용지(1종) 120g/m²)

(제5쪽)

3. 신고(변경사항)			
이륜자동차번호	소유자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번호)	주 소	신고연월일 확인기관 [㉠]

74mm×105mm

(보존용지(1종) 120g/m²)

(제6쪽)

4. 정비(운행정지)명령사항			
순위	정비(운행정지) 명령내역	명령일자	확인일자 확인기관 ㉠

74mm×105mm

(보존용지(1종) 120g/m²)